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638호 2021. 12. 31.(금)

공 고

○낙시통제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행정예고-----1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1-1298호

낙시통제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낙시통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낙시통제구역 변경(추가)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지정목적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3. 관련근거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낙시통제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낙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4. 주요내용

가. 변경사항

구 분	낙시통제구역(면적)
기 존	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L=0.9km, A=1.8ha)
	민락동 푸르지오~롯데캐슬 아파트 앞 테트라포드(L=0.6km, A=0.7ha)
	남천동(삼익비치아파트~광안대교) 테트라포드(L=1.6km, A=1.9ha)
추 가	남천동(광안대교) 테트라포드(L=0.3km, A=0.37ha)

나. 변경구역도



다. 통제내용 : 낚시금지

라. 통제시간 : 지정고시일 ~ 해제 시 까지(24시간, 연중)

마.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2. 29. ~ 2022. 1. 21. (23일간)

6. 의견 제출

○ 제출내용(붙임서식 참고)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대안 등)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성명, 송달 가능한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모사전송(Fax)

○ 제출기한 : **2022. 1. 21.(금) 18:00까지**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일자리경제과)

- 우 편 : ☎4830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남천동)
- 모사전송 : 051-610-4479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접수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에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2)

붙임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제목 :	
	의견	
	기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